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000호

도로설계기준(KDS 44 00 00)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(KCS 44 00 00) 개정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「도로 설계기준」(KDS 44 00 00), 「도로공사 표준시방서」(KCS 44 00 00)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2. 12. 30.

국토교통부장관

1. 건 명

- 도로설계기준(KDS 44 00 00)
- 도로공사 표준시방서(KCS 44 00 00)

2. 구 분 : 부분 개정

3. 목 적

-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규정의 최신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로설계기준(KDS 44 00 00)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(KCS 44 00 00)를 정비함으로써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(‘20.3)의 개정된 시설한계 내용을 ‘도로설계기준 횡단구성(KDS 44 20 05)’에 반영

- 「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」(17.4)의 포장재료(기층)에 대한 개정내용을 '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동상방지층, 보조기층 및 기층 공사(KCS 44 50 05)'에 반영 등

5. 관련단체 : 한국도로협회(☎ 02-3490-1000)

6.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

-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,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(☎ 044-201-3893),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(☎ 031-910-044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(www.kcsc.re.kr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